

건축사 보수교육 유감

李丞雨

(주) 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Platform/The Thought of Architects' Repair Education
by Lee, Seung-Woo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은 최소, 또는 최대한의 카테고리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 운영의 묘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씨비스업법이 종업원의 미소 종류까지, 친절의 범위까지 제한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강압이다.

보수교육이 실시해야 한다는 법이 있으니까 교육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대상과 교육효과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획일적인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학자나 전문가를 위한 교육처럼 좀 더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하겠다. 建築学会의 학술발표회처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세미나식으로, 아니면 용도 건물별로 심포지움식으로 시행하면서 그 경우에 필요한 건설부의 방침, 적용법령 등을 삼입한다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서로 바쁘고 만나기도 힘든 建築士끼리 어떻든 한 자리에 모이니만큼 建築士 축제마당을 벌일만큼 흥겹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장소가 되며,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전문단체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인간은 자신이 만든 굴레에 스스로 구속받는 오류를 충분히 저지러 수 있는 動物이다. 현명하고 슬기로우면서 가끔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무지한 행동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모인 집단 사회는 그 오류를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심히 끌려가는 나태와 무관심을 우린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지 않은가?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그리고 고통없는 결실도 없다. 구성원이 성숙하면 단체도 성숙하고 사회의 제도나 법칙도 성숙해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소 아프더라도 수술하고 노력해야 할 때다. 모든 것은 차츰차츰 좋아질 것이다.

어느덧 한껏 무르익은 봄의 푸르름을 마음껏 느끼고 그 풍만된 감동으로 올해를 시는 활력소로 삼자. 정직한 自然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자.

어느새 6월의 문턱에 성큼 와 있는데, T. S. Eliot가 그의 詩集 “황무지”에서 그렇게 잔인하다고 노래하던 4월이 올해 우리의 경우엔 꽤나 긴 듯한 느낌이다. 경제적인 성장이 다소 눈에 보인다고 선진국에서는 수입규제다, 개방압력이다 하며 각종 ‘압박’을 가해 오고 대내적으로는 대형 경제사건, 정치적 격동, 어수선한 사회사건들이 신문의 제목활자를 2~3단 검은색 고딕으로 섬뚱하게 장식한다. 신문의 편집만봐도 그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했던가. 나날이 변모해 가는 제반 여건속에서 우리 建築士 사회에도 그 사명이 이야기 되고 공정거래라는 용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니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더우기 “建築士 보수교육”이라는 현실에 접하게 되니 作品을 향해 꿈꾸던 모든 생각들을 이땅에 불들어매야 하는 세속감을 맛보는 기분이다. 세익스피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다. “비록 당신이 세계적인 文學家지만 文學活動을 계속하려면 법에 규정된 대로 文法과 맞춤법, 작가의 자세등에 대해 연간 정해진 시간 만큼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당장 면전에서

잉크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오랜 세월동안 애써온 건축계 최고의 전문가인 건축사들에게 “教育”이라는 어휘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하건 호소력이 없고 전제주의적인 방식이다. 언제까지나 지도니, 교육이니, 지시니 하는 일방통행식 用語에 숙달되어 있어야 할까. 대화, 토론, 협의 등의 좀 더 고차원적으로 신사적인 말들이 벌써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세계적인 추세와 업무자체의 전문성 및 사회 전반의 발달에 힘입어 우리 건축사사무소도 기업화, 전문경영화 시대에 돌입해 있으며 건축사는 각자의 哲學과 知性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作品世界와 思想을 충실히 닦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건축사들에게 技士보수교육과 다름없는 주입식 교육방식으로 사고의 범위를 미리 한정해 놓고 주어진 교재로써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시간만큼의 교육을 반복 실시해야 하는 까닭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할까?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